

의안번호	2204942
의 퇴 인	권향엽 의원
회 답 일	2024. 10. 24.
추 계 번호	24B43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의8제2항 (핵심장치등의 안전 성인증 절차 등) 후단 신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경우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은 구동축전지를 이루는 최소단위를 기 준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0조의8제2항(핵 심장치등의 안전성인 증 절차 등) 후단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구동축전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실시(안 제30조의8제2항 후단 신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동축전지(배터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실
시할 경우 구동축전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
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UN 규정 등 자동차 국제기준에서도 셀 단위 배터리 시험이 마련되지 않아, 배터리 셀 단위 안전성능검사의 시행을 위해서는 셀 단위 안전기준 및 평가장비 마련, 시험방법 수립 등의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최소 단위 기준 구동축 전지 안전성능시험의 실시에도 소요될 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
 - 현재 셀 간 열전이 지연 기술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 고도화, 평가방법, 장비 개발 등을 위한 ‘전기자동차 안전성평가 및 통합 안전 기술개발’ R&D가 진행 중(’23~’26)인데, 개정안 시행 시 셀 단위 안전기준, 평가장비 등 개발을 위해 별도 R&D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셀 단위 시험 진행을 위한 센터 구축 비용, 인력 증원 등 소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 제76조¹⁾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셀 단위 안전기준 및 평가장비 구축, 시험방법 및 소요기간 등에 따라 안전성인증시험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기준 개발, 장비 구축 등 인증 시행 전에 선행될 과제가 있어, 안전성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임

1)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치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8의2.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